

2020년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우리 원은 청탁금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합니다.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1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으로부터 사례금과 여비를 지급받고 외부강의등을 수행한 직원이 소속기관에서 또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 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	<p>1.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p> <p>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위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p> <p>원칙적으로 요청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교통비, 숙박비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모두 포함하고, 만약 지급받은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p> <p>만약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료 6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수령하고 또한 소속기관에서도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70만원을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정한도액인 60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사례금 신고·반환을 하여야 하고 불</p>	-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이행 시 「청탁금지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여비의 이중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기관 여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 여비규정 제31조(여비의 조정)에서는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금 중 교통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면 여비 이중지급으로 보아 소속기관의 여비지급액에 대하여 회수처분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p>	
2	<p>국가(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수행했으나 초과 사례금이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 여부에 대한 문의</p>	<p>「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초과사례금을 수수하고 이를 신고·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 및 제25조 위반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1조 및 제23조제4항에 따라 징계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p>	-